

I. 머리말

언론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국민의사를 형성하는 원리이고, 언론의 자유를 통해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이룩할 수 있다.¹⁾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 제 21 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고, 그 자유의 일편인 표현의 자유는 의견발표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의 자유와 이를 논평하는 논평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보도의 자유는 보도할 자료를 수집하는 취재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야만 의미가 있다. 또한 취재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²⁾에 봉사한다.

알 권리나 취재의 자유가 헌법상 인정되는 중요한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보도의 자유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³⁾

타인과의 접촉을 전제로 하는 국가의 공동생활에서는 언론도 타인의 생활영역을 존중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아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취재의 자유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 불가침, 도덕률 존중, 헌법 질서 존중 등 국가적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본권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한계적 제한 요소에 의하여 제약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헌법 제 21 조 제 4 항), 공공복리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헌법 제 37 조 제 2 항).

일반적으로 기자⁴⁾의 취재 활동은 각 담당 분야 별로 분담된 취재대상(해당분야별 관계기관, 단체, 조직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물)을 중심으로 출입기자실을 근거로 하는 이른바 출입처 중심의 취재관행이 몇 십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⁵⁾ 이하 본고에서는 우리 언론의 관행 전반에 관한 유형적 고찰과 그 유용성, 장단점, 한계, 새로운 취재체계의 모색에 관하여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자⁶⁾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관행의 위법적인 면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법적 환경을 살펴보고, 적법하고 바람직한 취재환경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개선책을 제한하고자 한다.

II. 위법적 취재 관행과 법적 환경

취재란 기자가 뉴스 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취재 행위에는 취재원이라는 대상이 필요한데, 취재원은 기관이나 특정한 상황(기자회견, 강연, 합동연설회 등에서의 발언, 전쟁이나 재판, 범죄 등 사건현장 상황 등), 문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구체적인 실존 인물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취재과정에서 취재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취재 자료를 회득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방법을 행함으로써 위 법적인 상황을 초래하여 취재 기자가 민사적이나 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는 취재방식에 관하여 "취재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함은 물론 정직한 방법으로 취재를 해야 하며, 특히 취재 내용을 제공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 미국의 경우도 신문윤리강령에서 "뉴스를 수집함에 있어 기자들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8)

기자에게 국민의 자격 이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이나 판례가 대체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판례는 신문기자라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공공기관의 자료 열람, 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국민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보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열람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고, 폭행, 협박 등의 수만까지 사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0)

대체로 이러한 불법적인 취재 방법은 동시에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신분 위장과 숨겨진 카메라 이용, 신분 위장과 주거침입, 문서 절취 등의 행위가 거의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기자들의 위법한 취재 관행은 기자들의 윤리의식 부재라는 내재적이고 개인적인 탓도 있으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밀실수사, 밀실행정, 언론기관의 지나친 상업주의, 특종 욕심, 취재 강요 등 외부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12)

1. 신분위장(자격사칭 등) 취재

기자들의 신분위장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13)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이나 기관원, 검사 등의 신분으로 사칭하여야만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두고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기 까지 한다는 주장도 있다.14) 어쨌든 과거에는 신분을 사칭하여 취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은닉된 진실에 가까운 자료를 발견하여 큰 공익적인 목적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는 측면만을 보아 묵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위법한 취재방법이 용인되지 아니한다. 기자 본인으로서 는 특종기사를 올렸다고 할지 모르나 그 후 자신에게 비난이나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언론사로서도 변호하거나 대처해줄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북한을 잠행 취재했던 중앙일보 이찬삼 기자, 1993년 봄, 김문기 국회의원의 '상지대 재단비리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모 금융회사의 자금부장을 불러낸 뒤 대검수사관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김 의원의 자금관리에 관한 정보를 캐내어 특종기사를 터뜨린 국민일보 K 기자 15)가 언론사의 막후로비로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면제받은 사례, 사학재단 상문고 비리를 취재하면서 중앙일보 Y 기자가 1994년 3월 검찰직원을 사칭하여 상문고 서무과장의 집에 들어가 서류 등을 뒤져 이 중 일부를 들고 나와 공무원자격사칭, 주거침입, 문서절취로 불구속기소되었다가 신분사칭이 그 동안의 언론사의 취재관행이었던 점과 언론의 사회적 공익적 역할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1년(유예할 형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례, 1998년 국민일보 B 기자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 중인 대구미래대학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1억원을 받았다는 국민일보 보도로 인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자, 반증자료를 찾기 위하여 1998년 10월 동부지청 검사실 안으로 침입하여 컴퓨터를 작동하여 사건 관련 파일을 찾던 중 일부 수사서류를 프린트로 출력하여 가져 나오려다가 발각되어 구속 기소되었다가 서울지방법원에 의하여 1999. 2.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16) 고액과외사건 취재과정에서 경찰관을 사칭한 최근의 한국일보 Y 기자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마약이나 매춘 문제를 취재하기 위하여 고객으로 가장하는 일, 병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하여 환자로 가장하는 일, 사이버 종교집단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도를 가장하는 일 등이 신분 위장에 의한 위법적인 취재 방법의 유형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사례로는 신문사 편집 내부의 상황을 취재하기 위하여 가명으로 신문사의 자유기고가로 위장취업한 후 근무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문사의 편집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쓴 사건에 대하여, 독일연방통상재판소는 1981년 1월 20일 기업 내부의 일은 경쟁법에서 보호받는 기업비밀이나 영업상의 비밀도 아니며, 신문의 편집회의는 공공에게도 공개될 수 있는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재한 것이기는 하나 공표함으로써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허용된다고 하였으나, 그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1984년 편집 부문의 신뢰성은 자유로운 언론의 기능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임을 강조하고, 위장취업이라는 방법의 위법성에 비하여 폭로한 편집회의의 내용은 그리 큰 공공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장 취업에 의한 취재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17)

2. 도청장치나 숨겨진 카메라 등에 의한 속임수 취재

타인의 은행구좌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탐지한 경우나 도청장치 또는 망원렌즈로 아파트의 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 주인의 허락을 받고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 간 경우에도 비밀카메라나 녹음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위법하다.18) 개인의 사적 저택에 대한 자세한 사진의 촬영과 공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하다.19) 우리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인한 취재라고 하여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이 사적인 경우에 관하여는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개장소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경우에는 비교적 널리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르 연방법원이 1997년 1월 22일 숨겨진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퍼체인점의 비위생적인 식품관리실태(방송사 프로듀서 2명이 푸드라이온 식품회사에 위장취업하여 육류관리담당자와 점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한 고기와 쥐파먹은 치즈를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촬영하였다)를 폭로한 미국 ABC 방송국에 5백 50만 달러의 손해배상판결을 한 것 20)은 우리에게는 가히 충격적이다.

TV 뉴스 앵커를 지낼 국내 우수 방송사의 보도국 국제부 차장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기자 신분임을 밝히면서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행위에 관하여, 하급심법원이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얼굴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언론인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적인 역할 못지 않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도된 사실은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뉴스의 가치성이 충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21) 공적인물의 공적 사항에 관하여는 그 취재 방법이 다소 위법하더라도 고도의 공공성이 있으므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방송사들이 요즈음 '카메라 출동', '시사매거진 2580', '카메라 현장' 등의 폭로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숨겨진 카메라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22) 비공개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의 현장을 고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첨단 전자 장비가 영상 취재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준다는 기술적 가능성 때문에 언론인들은 너무 손쉽게 이 같은 취재 기법을 남용하고 있는 느낌이다.23)

3. 허위 보도를 위한 허위 인터뷰 조작 등 가공 취재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그에 따라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취재대상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하여 인터뷰를 하기만 하면 대중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기사거리'가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 취재기자가 그만두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하여 취재기자는 이러한 대중의 알뜰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센세이션한 '화제거리'를 신속하게 특종으로 만들기 위한 일에만 집착한 탓을 자신이 지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미루어 예측이나 추측 등으로 그럴 듯한 인터뷰 기사를 멋지게 만들어 내기도 한다.

토요신문사가 문민정부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전부인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단독인터뷰를 통하여 이혼사유 등을 속속들이 밝힌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였다. 그 후 기자와 언론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1천만원의 지급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기자가 일부 독자들의 빛나간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특종 기사를 터뜨리기 위하여 불법으로 보도의 내용까지 조작하고 추측하는 위법을 저지른

대포적인 사례로 해당 기자는 물론 언론사 전체의 신뢰에도 금이 가는 결과를 빚었다. 또한 김일성 사망 후 연합통신이 마치 임수경 씨와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게 배포하여 말썽을 빚고 정정보도문과 사과를 한 것도 기자로서의 기본양심과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었다.²⁴⁾

4. 주거침입에 의한 문서 절취 등을 통한 취재

신문 위장은 종종 주거침입에 의한 문서 절취라는 불법 취재로 이어진다. 1998년 국민일보 B기자의 사례도 허위자격 사칭과 함께 건조물침입과 문서절취의 방법이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불법 취재 방법이다. 취재기자가 주인이 없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쳐오는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구성하므로 불법 취재의 유형을 논할 것도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임은 당연하다. 또한 취재의 목적을 숨기거나 신분을 사칭하여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련서류를 제출 받거나 때로는 몰래 가져오는 취재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도 형법상의 범죄로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현재 모든 공무원들이 개인용 컴퓨터로 업무를 취급하면서 행정관련자료나 범죄관련자료 및 기타 정보 등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물리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망으로 침입하여 서류의 내용 일부를 절취하는 방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침입과 관련 정보의 절취로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그로 인한 결과로 현출되지 아니한 이상 쉽사리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정보화시대에 있어 이러한 위법 취재 등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매수나 유혹에 의한 취재

금전이나 성교, 지위의 상승, 이권의 보장 등 각종의 방법으로 타인을 매수하거나 유혹하여 불법적으로 비밀정보를 빼내오는 취재 방법을 말한다. 취재기자가 쉽게 접근하여 얻을 수 없는 비밀정보나 특수전문분야의 정보 등에 대한 취재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취재방법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외무성 비밀전문 누설사건의 경우를 보자.²⁵⁾ 마이니치(매일)신문 정치부기자 갑이 마·일 오키나와반환을 둘러싼 외교교섭이 진행되던 1971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친구의 소개로 외무성 심의관실에 근무하면서 접수 문건을 관리하는 여성 사무관을 호텔로 유인하여 정을 통한 후 기밀문서를 배낼 사건에 관하여 취재의 목적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밀누설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받고 상고하였으나, 최고 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취재의 목적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밀누설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진정 보도의 목적이고, 그 수단 방법이 법 질서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사회관념상 시인되는 한 실질적으로 위법성을 결여한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기관이라 하더라도 취재의 수단·방법이 증뢰, 협박, 강요 등 일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수반한 경우는 물론 취재대상인 개인의 인격의 존엄을

현저히 유리하는 등 법질서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사회관념상 시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위 법성이 있다. 여성 사무관과 육체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하여 비밀문서를 빼낸 다음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그녀를 돌보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의 인격의 존엄을 현저히 유리하고 그 취재행위도 법질서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사회관념상 시인될 수 없다"고 하여 취재방법의 위법성을 인정 하였다.26)

6. 취재원의 조작된 범죄행위 등에 말려든 취재

언론사도 공익을 대변하는 사회의 공기 라는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언론사들이 아직 확립된 가치관과 언론관을 지니고 정론을 펴는 정신이 부족하고, 재정적 기반이 극히 미약하여 연간 상당한 적자를 내면서도 같은 계열사 기업을 통한 보이지 않는 도움을 통해 존속하고 있는 면이 있기에 자금을 제공하는 광고주의 압력에 굴복할 위험성 이 높다. 즉 이러한 거대한 광고주가 부당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사를 취재하는 경우에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조작되거나 편파적인 자료만을 취재하고 그에 근거하여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중립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와 같이 특정 신문사에 대하여는 사실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그 대기업의 영향력이 큰 경 우에는 이러한 왜곡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더욱 크다.

나아가 특정인이 기자와 친분관계를 맺거나 평소 신뢰관계를 갖도록 한 다음 그 한 관계를 이용하여 암암리에 자신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쪽에 유리한 정보를 제 공하고 그에 뒷받침 되는 자료만을 취재자료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권력자 등이 이러한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또한 특정 이익집단이나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시에도 한쪽에서 내놓은 정보의 함정에 기자가 빠지게 될 염려도 있다. 취재기자가 공정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덕목이나 소양이 부족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정보제공자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이 정보제공자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 309 조 제 2 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게 판례의 태도이다.27) 이 경우 기자가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선불리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진실로 믿어 이를 보도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병으로 처벌받지는 아니 할 것이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즉 취재를 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필요한 조사·확인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III.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취재 방법

1.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적 사항

정보공개 제도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 및 비판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장을 제공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권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28) 민주정치와 국민의 복리실현이라는 헌법상의 가치를 구현하게 된다.29) 현재 우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기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 단 국민 개개인에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30) 나아가 공공기관에게 정보공개 의무와 정보의 적절한 보존, 신속한 정보를 위한 정보관리체계의 정비의무까지 지우고 있다.31)

2. 취재수단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

1994년 가을,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취재기자만을 편성하여 전국 취재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정유용을 취재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인 취재활동을 하였다. 그 방법의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여 귀중한 자료를 입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그 청구 수수료가 지국별로 약 10만엔, 전국적으로는 100만엔 정도가 들었다. 그리 하여 신문사의 비용지출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있었고 공개 청구하면 제출될 자료를 신문기자에게는 취재과정에서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느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1997년도에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치의 150배를 초과한 다이옥신 검출결과를 숨긴 사실을 제보받고 관련 공무원에게 그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직접 그 자료를 주지는 아니 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만 하여 취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취재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와 효용이 있다고 한다.32)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청구도 새로운 취재수단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고, 이에 대비하여 취재기자들은 방대한 양의 정보에서 핵심을 가려 낼 줄 아는 분석력과 전문성, 집중력, 판단력 등을 기르고 그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즉 기자로서는 속보성에 대한 기민함보다는 분석·논평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시대에서는 이제 행정부측에서 어설픈 은폐보다는 관련된 정보를 홍수처럼 내놓아 취재기자를 교란하려고 할 것이고, 기자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살아 남으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언론사로서도 이러한 취재방법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확보하고 취재기자들에게는 신속한 기사 작성의 요구가 아니라 끈질기고 전문적인 취재로 정확한 기사의 작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보의 신청에서 부터 분석 후 기사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종래의 취재방식에서 기사를 작성하던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33)

3. 기자의 취재자유 의 한계

가. 취재의 자유의 의의

취재의 자유는 기자가 취재를 함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권력기관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이를 방해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언론사가 그러한 방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이지, 나아가 공무원이나 사인이 적극적으로 취재기자의 취재행위에 능동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의 하급심판결 34)로 지역의 주간신문이 그 지역 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한 후, 그 학교가 화단꾸미기 대회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자 화단을 사진촬영하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찍어 기사화하겠다고 교정 내의 취재를 요청하자, 교장이 자신의 교육관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한 데 대하여 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취재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취재의 자유는 취재에 관련한 국가기관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에 그칠 뿐 취재원에게 법적 의무를 생기게 하는 취재의 권리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취재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이 단순히 취재에 협력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취재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취재거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나. 알 권리의 내재적 한계

또한 취재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취재 방법도 자연히 위법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알 권리의 보장에도 그 내용이나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으로 한계가 있어 취재 대상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내재적인 한계도 따르게 된다. 대체로 그 한계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 공정한 재판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미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으므로 35) 여기서는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만 간략하게 검토한다.

기업비밀 등과 관련하여 조세법 및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사항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36) 우리의 하급심판결도 세무조사결과와 공개가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 경영의 기밀이 유출되어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조사에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에 저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다.3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알 권리, 즉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보유하는 기업에 관한 정보도 그 대상으로 될 수 있으나 기업의 첨단기술정보 또는 재정상태,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공개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알 권리도 보호될 가치가 있는 기업비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도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38) 한편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신용 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다.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비닉권

취재기자가 취재원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기자의 직업윤리다. 그런데 취재원비닉권이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언론기관이 그 취재원의 비밀을 공개하여야 하면 기자에게 자기 억제력을 강요하는 위축효과를 가져와 그 후의 뉴스의 수집, 특히 권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취재활동에 있어 위축을 가져오게 되므로 취재원의 비닉이 필요하고, 언론기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나 보도의 자유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39)도 있으나 대체로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실체적 진실발견도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이익이고 신문기자에게 증언거절권을 인정한 입법례도 있지만 그러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입장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40)

정보제공자는 취재원을 절대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신뢰하에서만 기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어 이를 인정할 필요도 있지만, 이를 인정하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자에게 취재원 증언거절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고 법률상 규정 없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41)

방법론적으로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좀더 자유로운 판단과 원활한 운용을 위해 법조계와 언론계의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다. 법률에서 인정하게 되면 남용의 여지가 많고 부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42)

라. 취재의 자유와 취재자료 압수수색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절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의 취재자료에 대하여 압수할 수 있는냐가 문제된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하카다역 소요사건에 대한 TV 방송국의 방송필름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다룬 사안에 대하여 "방송사가 방송을 위하여 촬영한 필름도 형사재판의 증거로서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43) 이어 리쿠르트 취재 테이프 압수처분(44)이나 미방영된 범죄관련 테이프의 압수처분에 관하여도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45) 미방영된 테이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이 사전 억제 또는 검열에 해당하고 보도목적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취재자와 취재협력자 사이의 신뢰관계 손상, 장래의 취재·보도의 곤란성 야기,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보도기관의 기능론 등의 견지에서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신속하고 적정한 수사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적법하다는 견해가 다수의 주장이다.(46)

우리의 경우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부에 관한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거절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고 법률상 규정 없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재자료의 압수·수색의 거절권을 인정한 구 언론기본법 제 8 조 제 2 항이 폐지되었고, 업무상비밀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112 조에는 언론기관의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재자료의 압수, 수색의 거절권 또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7)

마. 취재의 자유와 법정서의 사진촬영

나아가 법정에서의 사진의 촬영 등은 그것이 행하여지는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따라서는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소송외에서 공표되면 피고인이나 증인 등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해치는 등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 59 조가 사진촬영 등의 허가를 재판장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대하게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적정한 재판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일부 재판과정의 방영이 허가될 수 있다. 이른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형사법정 내의 촬영이 허가 되었다. 언론사나 일부 언론은 재판에 대한 생중계까지 주장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소위 심슨재판이 미국 내에서 TV로 생중계 되었다.

바. 취재의 자유와 확정형사기록열람청구권

취재기자에게 확정된 형사기록의 열람, 등사 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 규칙에 해당 재판의 피고인, 형사소송규칙 제 26 조 제 1 항의 소송관계인, 청구사유를 소명한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로 제한되어 있고, 다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얻은 정사의 허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자의 기록 열람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재판이 공개로 진행된 이상 재판의 경과를 기록해 놓은 소송기록이 공개의 대상이 되고, 재판의 공개가 방청이라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장소·시간적 제약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방청이라는 방법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기록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48) 재판기록의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클 때만 공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취재의 자유와 구치소 수감인에 대한 취재

이에 대한 논쟁의 검토보다는 일본의 최근 판례를 들어 두기로 한다. 잡지의 편집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를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면회가 취재 목적이 아니고 그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여 접견이 불허가 되어 접견 불허가처분취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제 1, 2 심에서 "구치소의 미결구금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등의 거주를 감옥내로 한정하는 조치로 당해 구금관계에 따른 제약의 범위 외에서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가짐이 원칙 이고 피구금자는 외 부인과 접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감옥 내의 규율 또는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접견불허가처분도 이러한 범위 내의 조치로 적법하다"는

사유로 패소하였고,49) 이 판결이 1998. 10. 27 일본 최고재판소 제 3 소법정판결에서 "구치소의 수감자에 대한 취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고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50)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이론과 결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IV. 위법한 취재방법에 따른 법적환경

위법한 취재방법에 의한 정보의 수집 또는 조달은 취재 자유의 범위 내에 들지 않으므로 보호 될 수 없다. 특히 그 방법이 형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당연히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형사 책임이 추궁된다. 그러나 그 취재 자료의 공개에 관하여는 그 공개에 따라 침해된 법익과 추구된 공공의 이익을 형량하여 그 위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종래에는 취재방법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개입과 법적 책임의 추궁은 소홀히 되어 왔고, 취재된 내용의 보도로 보호되어야 할 다른 법익이 침해되었느냐 여부와 기사로서의 성실 조사의무위반 여부,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거나 믿을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취재의 위법성 그 자체도 취재기자나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되고 또 그 책임의 정도도 점점 더 가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책임이 무겁게 매겨져 왔고, 최근에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성을 문제 삼아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재방식의 적법성의 관점 즉 언론사의 계약위반이나 주거침입, 숨겨진 카메라로 인한 무단 촬영 보도, 위장취업이나 자격사칭, 사기 취재 등으로 인한 취재의 불법성을 문제삼아 취재기자나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51)

신문이나 방송보도의 고도의 진실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재의 진실성, 정확성 추구의 원칙과 시간적, 기술적 제약에 따른 한계에 관하여 적절히 지적해 주고 있다. 즉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 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 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이고...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52)(밑줄은 필자가 표시 함)고 판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법한 취재 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피해 당사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물론 경찰이나 법원 등도 언론의 공익적 기능론의 관점에서 언론인들을 관대하게 다루어왔고, 특히 법의 처벌 영역에서는 거의 제외되어 왔다. 특별한 정치적인 사건이나 검찰과의 자존심 대결, 명백한 반사회적인 불법취재 행위가 아닌 언론이 공공성에 이바지한다는 사유로 특혜를 받아

왔다. 국민일보 K 기자건이나 중앙일보 Y 기자건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53).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사인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언론인 개인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경찰이나 법원이 법에 의한 제재에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1998년 국민일보 B 기자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도 그러한 방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법원 등의 위법 취재에 따른 위와 같은 판결 등은 형사사건에 대한 관련 기자의 처벌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보도된 내용의 허위성과 부정확성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온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위법한 취재 방법 그 자체를 문제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일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법원으로서도 이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취재 방법만 위법하고 그 취재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취재 행위 자체나 그 취재된 내용의 보도로 헌법이나 법령상 보호받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재기자에게 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위법한 취재는 그 방법이 위법할 뿐이지 취재된 내용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이 경우 그 취재 내용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비록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도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미국의 식품전문판매점의 위생상태점검을 위한 위장취업과 숨겨진 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그로 인한 고발 보도에 있어서 과연 피해자들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면서 단순히 취재 방법의 위법성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아직 시일이 좀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언론의 공공성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소송 과정에서도 주로 보도의 내용을 문제 삼아 취재의 부적절성과 불충분을 탓하여 왔을 뿐 단순한 취재 방법의 위법성을 부각시켜 문제삼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피해 당사자들은 진실한 내용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거론되어 보이지 아니하는 피해만을 가중 시키고 손해 배상을 인정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 명예와 신용훼손에 따른 위자료 등의 수액이 얼마 되지 아니한다는 생각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몰래 카메라에 의한 현장 취재라도 그 장면의 취사선택이나 조작 여하에 따라 사건의 본질이나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어 항상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위장 취업으로 인한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건의 일면만을 볼 수 있고, 전화도청 등에 의한 취재의 경우도 어느 일부분의 진실성은 담보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전체적인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기사 내용의 진실성과 조작성 여부에 대한 다툼과 함께 취재 방법의 위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취재 기자나 언론사에게 더 큰 책임이 가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법한 취재로 인하여 사실이 왜곡 보도된 경우에는 단순한 허위보도로 인한 책임보다는 더 중한 것으로 취급되어 취재기자나 언론사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을 것이다

V. 위법적 취재 관행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취재기자들과 고위직 언론인들의 언론관계에 대한 재검토

부정과 불의를 캐어 고발하고 건전한 사회를 위한 공기로서의 구실에 충실하는 것이 언론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한다면 언론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여야 하고 불법적이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됨은 자명해진다. 그런데 취재기자들은 마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취재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사건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선정적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무슨 '뉴스거리,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 식으로 극화하여 보도하려는 성향이 짙은 것 같다.⁵⁴⁾ 기자의 최고의 사명이 진실추구이고, 그 첫 진입 관문이자 전제 요건이 바로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인데 이를 망각하고 속보경쟁 의식으로 위법한 취재의 관행을 답습하고 정확하고 중립적인 보도보다는 신속하고 자극적인 고발이나 비난에 가까운 부정확한 정보를 마구 내보내게 되거나 앞지르거나 예측보도 등 고질적인 폐단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언론 고위직들이 특종기사를 은근히 강요하고 신속성을 위한 마감시간의 압력 등으로 일선 취재 기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종래의 위법적 취재 관행을 불식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취재 관행을 수립하기 위하여 먼저 현장에서 뛰는 취재기자들은 물론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고위직 언론인들이 언론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언론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재무장함이 필요하다.

2. 기자들의 자질향상과 언론기관 수의 최적화 및 과당경쟁 자제

공정한 보도와 바람직한 취재 관행의 확립을 위하여는 언론인의 전문성과 자질의 제고도 요청된다. 아직도 전문적 지식이 상당히 뒤떨어지거나 경력이 많지 않은 기자들이 많이 있어 충실한 보도내용과 객관적 분석보다는 선정적 보도방식으로 저급 독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이목을 끌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또한 각 취재대상기관마다 취재자들의 출입처를 두고 있는 현실 상황에 그대로 안주하여 다른 기자의 취재 내용을 그대로 모방·의존하는 폐단도 살아 있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 이제는 취재기자들이 기사의 취재를 서로 모방할 것이 아니라 이를 탈피하여 문제 중심으로 심층적인 전문 보도에 보다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를 선택·분석·비판·종합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정보공개 청구를 취재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 전문화된 자질과 함께 반드시 기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기 위하여는 언론사로서는 언론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자 개인으로서도 끊임없는 자기 수련과 연구 및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제도적 장치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55) 나아가 언론사로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사내에 정보공개부를 두어 적정한 요원을 확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56)

아울러 모든 언론사가 동일한 관심사만에 치중하여 개성 없는 신문이 되며 과당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각자 개성과 색깔을 나타내어 건전하고 전문적인 경쟁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 우리 나라의 언론기관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한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만도 무려 10 개나 되는 것은 세계에 유래 없는 일이다.57) 그러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우리 나라의 정론지라고 자타가 공인하여 줄 만한 신문이 없는 것도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같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색깔과 논조의 신문이 많으니 자연히 질적으로 최선·최상의 신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부수의 확장을 통한 최대의 신문을 지향하게 되고 58) 광고주의 요구에 맞는 상업적인 신문으로 전략할

위험성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각 지방마다 지방 신문, 직업별, 산업별 분야마다 전문성을 표방한다고 주장하는 신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신문 등 신문사의 수가 너무 많다. 그리하여 최대한의 광고수입과 구독료 수입을 올려 적자를 면하려고 59) 정면경쟁, 판매경쟁은 물론 필연적으로 기사 속보의 경쟁을 초래하게 되고, 자연히 위법한 취재관행이 만연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느 신문, 방송이든 하나만 보고 들으면 나머지 신문이나 방송이 무엇을 쓰고 말하고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방일간지의 경우는 경영상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1993 년도에 58 개(1987 년에는 10 개에 불과 하였음)나 되고, 그 중에서도 5 개사를 제외한 대부분 신문사가 1 년 평균 한 신문사당 5 억원의 적자와 누적결손액이 20 억원 정도라고 하니 그 부실과 불법취재, 광고강요, 촌지수수 등 온갖 부정행위를 저지르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더구나 지역신문은 1996 년 161 개나 되고 그 중 90%이상의 신문사가 적자운영이라니 그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나 폐해가 어느 정도 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60)

다만 적정한 언론기관과 언론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서만 가능할 것이고 그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한 구조 조정을 선불리 하였다가는 단순히 적정수의 언론사의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예기치 않은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인과 국민 모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철저하게 계획 준비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범죄관련보도의 양이나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범죄보도가 분명히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범죄 예방이나 억제의 효과를 가져오고, 시민에게 범죄로부터의 자위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 수사활동에 대한 신뢰와 감시기능, 범죄를 낳게 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병리적 현상의 해결 촉구,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의 효과 등을 가져 온다는 순기능적 면이 있으나 61) 민간의 추리심리를 자극하여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려는 면이 강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주변인물의 민권이 무시되며,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절차의 운용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등 불법한 취재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에서는 1970 년대 중반부터는 타블로이드 판을 제 외한 일간지에서는 특별한 사건에 한정하여 범죄보도를 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언론도 선정성이나

흥미본위의 표피적 범죄보도보다는 더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기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일이다.62)

언론기관이 공익적 가치보다 선정적 보도관행을 통하여 자사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나친 경쟁을 벌일 경우 앞지르기 보도, 추측 보도, 예단보도로 과장과 왜곡 보도로 인권침해와 언론 불신을 야기할 위험성과 독자의 알팍한 말초신경적 호기심에 야합하여 선정주의보도에 이르게 될 폐해가 농후하다. 그와 함께 불법적인 취재 방법의 관행이 더욱 짙어질 것도 현한 일이다.

3. 국가기관 등의 공개행정의 추구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협조

자유로운 언론 및 알 권리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정당한 취재를 위하여는 정부나 사법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서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개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 21 조).

나아가 바람직한 취재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입법화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재판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외의 존엄성과 질서유지,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사진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특별한 경우에는 취재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63) 이와 같이 국가의 모든 활동 분야에 있어 취재나 정보청구 등과 관련된 제도와 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취재기자들이 적법한 취재방법과 취재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기자가 사건 내용을 정확히 보도 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취재기자가 정보제공자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수궁하고 그들로부터 전문성까지 도움을 받으면 불법한 취재관행의 많은 부분은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

4. 국민들의 권리의식 강화

위법한 취재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이 언론의 자율적 윤리강령에 포함되어 있으나, 윤리 강령은 추상적이어서 취재활동에 있어 구체적 행동지침이 되기 어렵고 위반시에도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어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될 수 없으며 단순히 언론사의 대외적 홍보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64)

따라서 언론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권리의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서서히 그러한 권리의식이 제고되기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언론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두려워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한 정도이다. 절대권력이 부패한다는 진리는 언론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경찰 등 언론의 통제기관은 물론 국민이 언론감시자로서 언론의 부정을 철저히 밝혀 내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사전에 그러한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민감시단체가 종래 행정과 사법 및 입법부 등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를 위하여 기울여 온 노력을 기자의 위법한 취재관행의 불식과 언론사와 광고주의 부정적인 면의 제거를 위한 감시기능에까지 확대하여 신경을 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누구나 언론사와의 중재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법원을 통하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에의 고발 등을 통한 형사재판절차에까지 이르게 되면 무절제한 소송과 고발의 남용으로 법원과 검찰 등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칫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인들의 취재의욕마저 위축시켜 언론이 비판과 감시, 알권리의 자료 제공이라는 본 질적인 사명에 소홀히 하게 되리라는 우려는 없지 아니하나,⁶⁵⁾ 적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의 길은 보다 폭넓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제도에 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용, 신속한 구제, 심리적, 경제적 압박감의 완화, 원활하고 유연한 조정방법의 제고 등 장점을 더욱 많이 지니고 있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언론사의 취재 관행의 위법적인 면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법적 환경을 살펴보고, 적법하고 바람직한 취재환경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개선책을 나름대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때로는 단호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본 것이라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스럽거나 언론의 본질과 생리, 존재 가치, 우리의 현실 등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점에서 본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글이 언론사의 기사취재의 현실을 보다 한 단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려는 언론인과 국민 모두의 노력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졸업. 프랑스 ES. 및 D.E.A. 학위취득(엑스마르세이유 제 3 대학, 언론 방송법 전공)
- 대전,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판사.
- 세계언론판례총람(공편)
-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1) 졸고, 「공익에 의한 언론자유의 제한」,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77 집 -헌법문제와 재판(하), 1997, p.287.

2) 알 권리(the right to know)란 용어는 1945년 AP 통신의 대표였던 미국의 켄트 쿠퍼(Kent Cooper)가 강연에서 처음 사용하여 그 후 1950년대부터 정부에 대하여 정보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언론인의 운동으로서 주장된 것이고, 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표현하는 자유(Freiheit der Meinungsäusserung)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표현을 받는 자유 즉 표현을 받아들이는 자유(Freiheit der Meinungsemphanges) 또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유)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 즉 정보의 공재를 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89. 8. 4. 선고 88헌마 22 결정은 알 권리를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알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계인권선언 제 19 조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거나 입수 및 전달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위수, 「알 권리와 정보공재청구권」,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77 집 헌법문제와 재판(하), 1997, p.41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 21 조(언론·출판의 자유), 제 1 조(국민주권주의), 제 10 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 34 조 제 1 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줄고, 위의 글, p.287. 주 1 참조.

3) 대법원 1999. 1.26. 97 다 10215 판결, 「판례공보」, 1999 상, p.330.

4) 이 글에서 언론이라는 의미는 언어나 문자, 영상, 형상 등 모든 표현수단에 의한 일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담화, 토론, 연설이 나 신문, 기타 출판인쇄물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회화, 사진, 조각, 연극, 영화, 음악, 레코드, 비디오 등의 방법으로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언론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기자라는 말도 신문기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방송기자는 물론 다른 매체에 의하여 정보를 전달하고자 취재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이혜복, 「한국에서의 기사취재 현실과 그 문제점」,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86년 가을, p.9. ; 송정민, 「언론취재체계 및 기자단에 관한 제문제」, 『언론중재』, 1992년 여름, p.6. 참조.

6) 이에 관하여는 송정민, 위의 글, pp.6-12. 에서 비교적 자세히 검토되고 있다.

7) 팽원순, 『한국언론법제론』, 법문사, 1994, p.182.

8) 팽원순, 위의 책, p.183.

9) 비슷한 사건으로 재클린 여사의 개인적인 신상을 직업적으로 취재하려고 한 사진기자의 행위는,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귀찮게 몰아 다니는 것은 유명인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이 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뉴욕주 남부 관할) 1972. Galella v. Onassis 사건, 한국언론연구원, 『세계언론판례총람』, 1998. p.234, p.468 참조.

1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 도 2344 판결, 『판례공보』, 1992, p.310.

11) 김창룡, 「취재관행과 법윤리상의 일고찰」, 『언론중재』, 1995년 봄, p.25.

12) 김창룡, 위의 글, p.25.

13) 위의 글, p.32.

14) 일선에서 기사를 취재하는 많은 기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라면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취재하려는 욕구와 유혹에 빠져드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도 있다.

15) 위의 글, pp.25-26.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2. 9. 선고 98 고단 5042 판결

17) 자세한 사항은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p.357 이하 ; 한국언론연구원, 앞의 책, p.237 등 참조.

18) 미국 제 9 순회구 연방항소법 원 1971.Doeteman v. Time. Inc. 사건. 한국언론연구원, 앞의 책, p.467.등

19) 파리고등법원 1986.3.5.판결, 언론연구원, 앞의 책, p.471.

20) 정윤식, 「뉴미디어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언론중재』, 1997년 봄, p.17.

2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7.8.3.선고 96 가합 82966 판결, 하급심 판결집, 1997-2, p.94. 그 대체적인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 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도로교통법 제 107 조의 2 제 1 호, 제 41 조 제 1 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다.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서 중견 언론인인 동시에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얼굴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언론인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적인 역할 못지않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보도국 국제부 차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기자 신분임을 밝히면서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은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뉴스의 가치성이 충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

22)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밀렵과정을 담으면서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억지로 돈을 주고는 뇌물수수 현장을 폭로한 것처럼 방송하여 취재원을 함정에 빠뜨린 1996.12.24.에 방영된 KBS 고발성 기사는 이러한 위법취재 방법에 따른 폐단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충격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재경, 「위장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보도의 윤리적 문제」, 『언론중재』, 1997년 여름, p.34.

23) 이재경, 앞의 글, p.33.

24) 김창룡, 앞의 글, pp.27~28.

25) 일본 최고재판소 1978. 5. 31. 판결, 『판례시보』 887 호, p.17.

26) 이에 대한 해설로는 내전문소, 「취재활동의 한계」, 별책 주리스트 111 호, 1991.4.형법관례백선 I 총론(제 3 판), p.42 이하; 미차선인, 「표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 주리스트 증간, 헌법의 쟁점(신광), p.93 이하 참조.

2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 도 3535 판결, 『판례공보』, 1994, p.1551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29) 한위수, 앞의 글, p.433.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6 조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5 조

32) 소천일, 「정보공개시대의 취재방법은?」, 『법학세미나 521 호』, 1998. 5.

일본평론사, p.128.

33) 소천일, 앞의 글, p.129. 기자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취재시스템으로 전문성과 분석·논평위주, 마감시간제의 유연한 운용 외에 기자들이 출입처기자단에 안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문제 중심의 현장에서 자기 발로 뛰어 중요한 정보를 발굴해내는 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4) 대판 지방재판소 평성 9 년(1997).11.28. 국민학교취재거부국가배상청구사건판결, 『판례지방자치』 177 호, 1988. 10. p.25 이하.

35) 졸고, 앞의 글, p.299 이하 ; 한위수, 앞의 글, p.418 이하.

36) 프랑스 국사원 1984. 11. 16. Mesmin 판결, 한국언론연구원, 앞의 책, p.244.

37) 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 구 39262 판결,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납세자의 거래처, 경영전략, 채무구조 등 경제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누출되어 경쟁을 기본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침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한위수, 앞의 글, p.421 에서 전재.

38)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정보 유통 등에 관한 법체계에 관한 광범위한 서술로는 박용상, 「정보법제의 체계와 내용」, 『법조』, 1998년 6, 7, 8 월호(501~503 호) 참조.

39) 팽원순, 앞의 책, p.313 이하.

40) 일본 최고재판소도 소화 27 년(1972 년) 8. 6. 대법정판결에서 "일반국민의 증언의무는 사법재판의 적정한 행사에 협력해야 할 중대한 의무이고, 그 예외규정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신문기자에게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절권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입법정책상 고려될 여지는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의사 등에게 직업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거절권이 인정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미흡선인 「취재원비닉과 표현의 자유」, 별책 쥬러스트 95 권, 1988. 1. 헌법판례백선 1(제 2 판), p.116

41) 따라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기자의 증언거절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실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286 조 제 1 항 제 2 호의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위수, 앞의 글, p.428.

42) 정동욱, 「기자의 취재편은 보호받는가」, 『경영법무』, 1997. 10, p.24.

43) 한국언론연구원, 앞의 책, p.255.

44) 일본최고재판소 1989. 1. 30. 결정, 위의 책, p.262.

45) 일본최고재판소 평성 2(1990). 7. 9. TBS 특별항고사건 판결, 『판례시보』 1357 호, p.34

46)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좌등룡지, 보도기관의 취재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이 헌법 21 조에 위반되지 않는가라는 사례, 쥬리스트 1099 호, 1996. 10. 15. 호 p.140 : 소림무, TBS 취재비디오테이프압수처분사건 쥬리스트 908 호, 평성 2 년 중요관례해설, p.24 ; 판본창성, 취재의 자유와 방영된 비디어테이프의 압수처분, 판례세미나 '90, p.150 ; 입산 곡, 「방영된 취재비디오테이프의 압수처분과 취재의 자유」, 별책 쥬리스트 130 호, 헌법판례백선 1(제 3 판), p.150 등 참조.47)

47) 한위수, 앞의 글, p.429.

48) 정중섭,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복사할 권리와 그 제한」, 『인권과 정의』 235 호, 1996. 3, p.83.

49) 제 1 심판결에 대한 평석은 지곡아자, 「미결구금자와의 접견제한과 취재의 자유」, 별책 쥬리스트 130, 헌법판례백선 1(제 3 판), p.154.

50) 『언론중재』, 1998 년 겨울, p.87.

51) 『언론중재』, 1999 년 봄. p.93.

5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 다 10215 판결, 『관례 공보』 1999 상, p.330.

54)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P 교수의 죽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고 관계자들로부터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불리 ‘실력이 없어 비관한 끝에 자살’한 것처럼 보도한 기사는 취재기와 데스크편집자의 무책임한 예단에 의한 ‘뉴스거리’에 집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로 인하여 망인 자신을 비롯한 그 가족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신뢰성 상실을 가져왔다. 언론이 무엇을 기사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자질과 인식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웅, 「언론의 경쟁적 취재 · 보도와 권익 침해」, 『언론중재』, 1997 년 여름, p.16 이하 참조.

55) 지금도 전문가가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제는 취재의 준비 단계나 취재 행위 나아가 취재된 정보의 분석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의 실질적 인 협조와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56) 소천일, 앞의 글, p.129.

57) 이민웅, 앞의 글, p.10.

58) 방송의 경우는 시청률 경쟁에만 매달려 저질 프로그램을 양산하게 되고 사회의 공기로서의 역할이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등한히 하게 된다.

59) 언론사는 재무와 회계에 있어 적자라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배경에는 재벌이나 우수 기업이 있고, 이들은 언론의 무소불위의 힘을 믿고 있기에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언론사 경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사도 독립재산제와 독자적인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민웅, 앞의 글, p.12.

60) 장호순, 「지역 언론의 취재 보도와 언론윤리」, 『언론중재』, 1998 년 봄, p.17.

61) 이민웅, 앞의 글, p.19.

62) 홍기태, 「형사재판에 대한 보도와 그 한계」,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 77 집, 『헌법문제와 재판(하)』, p.402.

63) 박종수, 「한국언론의 윤리성과 자율규제」, 『언론중재』, 1993년 여름, p.15.

64) 중요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형사재판의 경우 언론인들은 일반 공중과 동일한 접근권을 가지며, 나아가 그들에게 참여한 시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바를 보도할 수 있도록 특별좌석과 출입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원칙을 선언한 미국의 리치몬드 재판공개 사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1980. 448u.5.555, Richmond Newspaper 「5, Inc. v. Virginia. 언론연구원, 앞의 책, p.246 이하 참조.

65) 그러나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정치권력, 경제세력, 기타 힘이 강한 이익집단이 부당한 언론에 의한 희생자가 되기보다는 고분고분하고 말이 없는 정치적, 경제적 약자들이 언론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언론은 이들에 대한 책임의 인정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등에 관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도 최근 NHK가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언론중재』, 1999년 봄호, p.92.